

영등포구의회
제19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3. 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22호로 2016년 2월 1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 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고,
- 나. 같은법 시행령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에 편입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폐지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본 폐지 조례안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과 관련된 규정이 2015.11.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정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그 동안 관련 법령의 개정 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례로 규정 하도록 하였으나, ‘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연혁〉

근거조문	재정보증을 정하는 법규형식	비 고
지방재정법 제116조	조례	2005.8.4.삭제
지방재정법 제95조	대통령령	2005.8.4.개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	행정자치부 장관	2005.12.30.개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	지방자치단체장 (규칙)	2007.4.5.개정

- 구청장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도록 한 ‘법’의 취지에 맞게 자치법규 형식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법

제11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2005.8.4. 전부개정시 삭제>

제9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05.8.4.>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전부개정 2005.12.30.>

제13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7.4.5.>